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1.

발 의 자 : 김은혜 · 김선교 · 최수진
엄태영 · 주호영 · 김상훈
조배숙 · 박정하 · 이종욱
조승환 · 강대식 · 서천호
박수민 · 고동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,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16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3조제2항 중 “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”을 “위해가 우려되는”으로, “법원은 해당”을 “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”으로, “개인정보로서 해당”을 “개인정보로서 법원 또는 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3조(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) ① (생략)	제163조(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<u>위해의 우려가 있다</u> 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·복사·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<u>개인정보로서</u>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(이하 “개인정보 기재부분”이라 한다)이 제3자(당사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3항·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)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위해가 우려되는</u> ----- <u>법원</u> <u>은 직권으로 또는 해당</u> ----- ----- ----- <u>개인정</u> <u>보로서 법원 또는 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